

미국과 구소련(러시아)간의 핵무기 통제와 그 한계

이 용호*

I. 서언

핵무기를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은 크게 UN총회와 GENEVA군축 회의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핵군축협상과 미국과 구소련(러시아) 양국 간의 양자간 핵군축협상을 통하여 이어져 왔다.

이 가운데 후자는 1970년대의 전략무기제한회담(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이하 SALT라고 약칭함), 1980년대의 중·단거리미사일 폐기협상(Negociation on the Elimination of Intermediate -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 이하 INF협상이라고 약칭함) 및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친 전략무기감축회담(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이하 START라고 약칭함) 등을 통하여 수행되어 왔던 바, 그 결과 ‘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조약(Treaty on the Limitation of Ant-Ballistic Missile Systems: 이하 ABM조약이라고 약칭함)’, ‘전략공격무기제한에 관한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 on Certain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이하 잠정 협정이라고 약칭함)’, ‘전략공격무기제한조약(Treaty on Limitation of

* 嶺南大 法科大學 教授

Strategic Offensive Arms: 이하 전략무기 제한조약이라고 약칭함), 'INF조약', 'START I 조약' 및 'START II 조약' 등이 체결되었다¹⁾. 특히 이들 조약들은 기타의 핵군축조약과는 달리 핵무기의 실질적인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예컨대 1993년 1월에 체결된 'START II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2/3를 감축하도록 합-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구소련(러시아) 양국은 핵무기 통제영역에 있어서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하여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상기 양국간의 핵무기 통제는 다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결된 조약의 이해과 관련하여 야기되고 있는 제문제 - 즉 核軍備의 폐기기에 소요되는 費用問題, 당해 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검증체제의 한계 및 러시아의 START II 조약에 대한 不批准 등 - 는 양국간에 진행되어 온 핵무기 통제의 근본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러시아의 국내상황(정치적 혼란 및 패권국가로의 복귀 움직임)도 양국간 핵무기 통제에 否定的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차 보다 효과적인 핵무기 통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써, 기존에 미-구소련(러시아) 양국이 진행하여 온 핵무기 통제의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구소련(러시아) 양국간의 핵무기 통제에 관한 협상과정과 그 협상을 통하여 체결된 핵무기 통제조약의 주요내용에 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1) 본고에서는 미-소(러시아)간의 핵무기 통제협상 가운데 기존 핵무기의 적극적 감축을 가져 온 협상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양국간에 체결된 지하핵실험금지조약, 평화목적핵폭발금지조약 등 일부의 조약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다.

II. 핵무기 통제의 협상과정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구소련(러시아)간의 핵무기의 통제협상은 SALT, INF협상 및 START 등의 3단계로 大別할 수 있는 바, 그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SALT

제1단계의 핵무기 통제협상은 SALT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SALT란 미-소 양국이 전략핵무기(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포함)를 제한하기 위하여 1969년부터 1979년까지 벌인 핵무기 통제협상으로서, SALT I (1969~1972)과 SALT II(1972~1979)로 대별할 수 있다.²⁾ SALT I을 통하여 1972년 5월 26일 미-소 양국은 'ABM조약'과 '잠정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後者의 '잠정협정'은 그 표현대로 잠정적인 조치로써 1977년 10월 3일까지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잠정협정

2) SALT가 시작된 배경으로는 '핵무기비확산조약' 제6조에서 핵무기보유국에게 부과하고 있는 核軍縮義務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미-소 양국의 현실적이고 군사적인 필요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1950년대 말부터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함으로 인하여 미국의 核戰略이 不安定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1960년대 이후 핵무기를 들러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예컨대 탄도탄요격미사일과 개별유도복수목표탄두의 출현)함으로써 미-소 양국은 핵전략의 修正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미국측으로서는, 소련이 핵공격에 대한 지역방위를 위하여 ABM網을 광범위하게 구축함으로 인하여, 자국의 핵전력을 무능력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련에게 先制攻擊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ABM의 규제를 위한 협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또한 소련측으로서도, 당시 Nixon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廣域미사일방어계획이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ABM의 규제에 대하여 양국의 이익이 일치하였음으로써, 미-소 양국은 동 협상을 시작하였던 것이다(T.C.Schelling, "What went wrong with Arms Control?", Foreign Affairs, Vol.64, 1985/86, p.221).

제8조 1항 및 2항). 이에 미-소는 전략공격무기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제한을 위하여 1974년 11월 'Vladivostok聲明'을 채택하였다. 동 성명에서는 "전략핵운반수단에 관하여 양측에 동일한 上限을 둔다는 것,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하 ICBM이라고 약칭)·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이하 SLBM이라고 약칭)·重爆擊機의 數를 양측 각기 2,400기로 제한하고, 이 중 1,320기만이 개별유도복수목표탄두(Multiple Independentry Targetable Re-entry Vehicle:이하 MIRV라고 약칭함)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 및 이러한 限界內에서 양측의 전략구성은 자유롭다는 것" 등 SALTⅡ의 大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미-소는 협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소련의 Backfire폭격기와 미국의 순항미사일을 협상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등의 문제에 관하여 異見을 좁히지 못하였다. 1977년 초에 미국은 전략무기의 상당량의 삭감을 포함하는 소위 포괄적 군축안을 提案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소련은 자국의 ICBM에 대하여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하여 거부하였다.

그 이후, 미-소는 'Vladivostok聲明'에서 정하고 있는 上限을 낮추려는 長期的 協定의 체결,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단기적 조정 및 SALTⅡ조약을 위한 기본원칙의 立案 등에 관하여 약간의 구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러한 합의를 기초로, 미-소는 전략공격무기에 관한 보다 지속적인 제한을 위하여 일련의 협상과정을 거쳐 1979년 6월 18일 전략공격무기제한조약을 체결하였다.³⁾

3) 전략공격무기제한조약은 그 후 비준되지 않았으나, 본 조약의 유효기간인 1985년 12월 31일까지(본 조약 제19조 1항)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그 조약의 내용대로 준수되어졌다.

2. INF협상

제2단계의 핵무기 통제협상은 1981년-1987년간에 진행된 INF협상을 통하여 달성되었다. 미-소 양국은 1981년 11월부터 중·단거리핵미사일의 撤廢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유럽에 대한 중거리미사일의 배치문제로 인하여, 동 협상은 1983년 12월에 중단되었다. 그 후, 1985년 3월 Geneva에서 개최된 “핵 및 우주협상(Nuclear and Space Talks: 이하 NST라고 약칭함)”을 통해 동 협상은 사실상 再開되었으며,⁴⁾ 그때부터 중·단거리핵미사일의 철폐를 위한 다양한 협상이 다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협상과정에서 미-소 양국은 1986년 10월 11일-12일에 개최된 Reykjavik정상회담을 통하여 INF조약의 基本條項과 현지사찰을 포함하는 검증문제에 합의하였다. 다만 검증문제와 관련하여, 미-소 양국은 현지사찰을 포함하는 엄격한 검증을 提案하고 있었지만, 현지사찰의 對象에 대해서는 相異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⁵⁾ 따라서 그후부터의 교섭은 주로 검증문제와 관련하여 진행되었는데, 1987년에 개최된 일련의 협상을 통하여 현지사찰의 대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결국 미-소 양국은 동년 12월 8일 INF조약에 서명하였다.

-
- 4) NST에서는 INF협상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START와 우주무기와 방어무기를 다루는 “우주방위협상(Defence and Space Talks)”을 병행하여 수행하여 왔다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1991:World Armament and Disarmament, Oxford Univ.Press, New York, 1991(이하 SIPRI Yearbook 1991이라 약칭함), p.x x ii, x x iv].
- 5) 현지사찰의 대상과 관련하여, 미국은 그 對象을 宣言된 시설 뿐만 아니라 선언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대한 현지사찰도 예상하고 있었는 반면에, 소련은 선언된 시설만을 그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黑澤 滿, 核軍縮と國際法, 有信堂, 1992, 191면).

3. START

제3단계의 핵무기 통제협상은 1982년-1993년간에 개최된 START를 통하여 수행되어 왔는 바, START I(1982~1991)과 START II(1992~1993)로 구성된다. 미-소 양국은 1982년 6월 29일 Geneva에서 START I을 시작하였으며,⁶⁾ 그 이후 전략무기를 감축하기 위한 약간의 협상문서를 상호 제안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협상과정에서는 미국의 유럽에 대한 중거리미사일의 배치문제와 미국측의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이하 SDI라고 약칭함)”⁷⁾ 선언 등이 장애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1985년 11월 21일 Reagan대통령과 Gorbachev서기장은

6) 1982년 5월 7일 Reagan미대통령은 “미·소간의 무기감축협상을 시작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書信을 Brezhnev서기장에게 보냈는데, 이 서신을 계기로 START 협상은 시작되었다고 하겠다(Amy F.Woolf, START and Nuclear Arms Control:Chronology of Major Event 1982-1992, CRS Report for Congress, 1992.6.26, p.1).

7) SDI프로그램은 미국방성에서 개발중인 ICBM방어장비 개발계획으로 전략탄도미사일을 발사의 초기 단계에서 탐지, 포착, 추적하여 탄도초기, 중기 또는 재돌입시에 이를 격파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이 계획은 1983년 3월 Reagan미대통령에 의하여 비행중인 핵무기를 공중에서 파괴함으로써 제3국에 의한 핵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을 표방한 “Star Wars”라는 연설을 통하여 시작되었다[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1993:World Armament and Disarmament, Oxford Univ.Press, New York, 1993(이하 SIPRI Yearbook 1993으로 약칭함), p. x x v]. 이 계획은 국내외적인 반대-특히 소련은 지속적으로 이 계획에 반대하여 왔으며 미국내에서도 일부 과학자들이 이 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가 있었으나, 역으로 소련으로 하여금 핵군축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아울튼 동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적의 ICBM을 탄도상에서 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하는 등 레이즈 무기 ‘알파’의 고출력실험에 성공하였고 운동에너지로서 브리릴언트 폐블스의 실험에도 성공하였다고 1989년 4월 미국방성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와 관련하여, 1990 회계년도의 예산에서는 그 예산이 삭감되는 등 예산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와중에 소련연방이 해체됨으로 인하여, 미국은 본 계획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행하였다.

Geneva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하여 “전략무기의 50% 감축원칙”에 합의하였으며, 1986년 10월 11일-12일에 개최된 Reykjavik정상회담에서 특정 형태의 전략무기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⁸⁾

특히 장거리 공중발사 핵크루즈미사일의 계산규칙(counting rules), 移動式 ICBM의 上限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규제형태와 내용에 관한 문제들은, 미국의 국무장관인 Baker와 소련의 외무장관인 Shevardnadze간의 일련의 회담을 거친 후에, 1990년 초에 사실상 해결되어졌다. 나아가 마지막까지 논란의 대상이었던 重ICBM의 현대화, 소련의 Backfire폭격기 및 이동식 ICBM에 대한 견중, 탄도미사일 탄두의 탑재, 원격측정의 암호화 및 신형 탄도미사일의 定義 등의 문제는 1991년 7월 11일-14일에 개최된 Baker국무장관과 Bessmertnykh외무장관간의 회담에서 사실상 해결되었다. 따라서 1991년 7월 17일에 개최된 London경제정상회담에서 Bush대통령과 Gorbachev대통령은 신형 탄도 미사일을 둘러싼 관련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동시에 START I 조약에 서명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다. 따라서 1991년 7월 30-31일에 개최된 Moscow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들은 START I 조약에 서명하였다.⁹⁾

1991년 8월 19일-21일 이른바 소련군부의 쿠데타에 의하여,¹⁰⁾ 1991년 12월 25일 소련연방은 해체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START I 조약의 유효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구소련연방중 핵무기를 보유한 공화국은 러시아를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카자흐 및 벨

8) Reykjavik정상회담에서 Reagan대통령과 Gorbachev서기장간에 합의한 가장 중요한 점은 START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제안사항이었던 重ICBM의 수를 반으로 감축한다는 합의였다(Amy F.Woolf, op.cit., pp.3-4).

9) Ibid., pp.8-9.

10) 그 쿠데타 이후, 1991년 9월 27일과 10월 5일에 Bush대통령과 Gorbachev대통령은 각각 핵무기프로그램과 무기의 배치를 변경하는 일방적인 선언을 행하였는데, 이는 해군비통제협상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선언에 대한 소련의 대응으로 보인다.

로루시 등 모두 4개국으로서, 그중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의한 START I 조약의 준수여부 및 핵무기보유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공화국은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였다. 우선 이들의 핵무기보유량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제3위와 제4위라는 점 때문이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미묘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카자흐는 이슬람색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START I 조약의 이행에 또 다른 장애가 내포되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1992년 5월 23일 미국의 국무장관인 Baker와 구소련의 4개 핵보유국의 대표는 Lisbon회담을 통하여 START I 조약의 이행을 위한 START I 조약에 대한 새로운 의정서, 즉 'Lisbon의 정서'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과거 미-소간의 START I 조약을 승인하는 한편 그 성격을 양자조약에서 다자조약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¹¹⁾ 동 의정서에서는 START I 조약에 대하여 비준절차를 거칠 것과 戰略武器保有庫를 START I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보다 더욱 감축하기 위해서 미-러간에 협상을 계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의 양국은 1992년 5월 24일 START II를 시작하였는데,¹²⁾ 1992년 6월에 Bush대통령과 Yeltsin대통령은 모든 지

11) 이로써 우크라이나, 카자흐 그리고 벨로루시는 START I 조약의 공식적 당사국이 되었으며, 본 의정서에서는 이들 4개 공화국으로 하여금 7년내에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폐기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Amy F.Woolf, op.cit., p.13). 또한 벨로루시, 카자흐 및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단시간 내에(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NPT에 핵무기비보유국의 지위로 가입하겠다는 公約을 포함하고 있다(SIPRI Yearbook 1993, op.cit., p.550).

12) 미-러간의 START II는 1992년 1월부터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2년 1월 28일에 Bush미대통령은 'START I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전략공격무기를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Yeltsin러시아대통령이 그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START II는 시작되었던 것이다. 따라서同年 2월, 3월, 5월 및 6월에 Baker와 Kozyrev간의 회담을 통하여 협상의 大綱에 합의를 보았으며, 동년 6월 17일에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하여 전략공격

상발사 다탄두미사일을 제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나아가 START I 조약에서 합의된 것보다 50% 더 핵무기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약 8개월이라는 협상과정을 거쳐¹³⁾ 1993년 1월 3일 START II 조약에 서명하게 되었다.¹⁴⁾ 이는 “희망의 조약”으로 불리워질 정도로 인류에게 큰 기대를 부여하고 있다. 이 ‘START II 조약’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미국의 핵무기보유량은 1960년대의 수준으로 또한 러시아의 핵무기보유량은 1970년대 중반의 수준으로 각각 감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류는 그 만큼 핵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III. 제조약의 주요내용

1. SALT I 조약의 주요내용

SALT I 을 통하여, 1972년 5월 26일 ‘ABM조약’과 ‘잠정협정’ 및 ‘잠정협정에 대한의정서’를, 1973년 5월 30일에 ‘상설협의위원회(Standing Consultative Commission: 이하 SCC라고 약칭 함)에 관한諒解覺書’ 및 ‘SCC부속규칙’을, 1973년 6월 21일에 ‘전략공격무기의제한을 위한 협상

무기의 감축을 위한 諒解覺書에 서명하였던 것이다(Ibid., p.555).

- 13) START II는 1992년 9월에 사실상 거의 확정되었으나, 미국측의 대통령선거문제와 러시아측의 국내문제로 인하여 동 협상의 결론은 지연되었다(Ibid.).
- 14) 미국과 러시아간의 ‘START II 조약’이 1993년 1월 3일에 전격적으로 서명된 이유는 양국이 동 조약을 속히 타결지을 필요성이 상호간에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즉 먼저 미국측에서는 Bush의 재선실패로 인하여 동 조약의 서명을 次期行政府에 넘길 경우, 새로운 협상기간을 요하게 됨으로써 조약의 체결에 긴 시간을 요하게 된다는 점과 Bush의 외교적 완성속에서 Clinton이 국내문제에 전념하게 된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국내정치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Ibid., p. 557).

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에 관한 협정'을, 그리고 1974년 7월 3일에 'ABM조약에 대한 의정서' 등이 각각 체결되었다.¹⁵⁾ 따라서 'SALT I 조약'이란 상기의 諸文書를 의미하는데, 이 중에서 'ABM조약(16개 조항)'과 '잠정협정(8개 조항)'이 'SALT I 조약'의 根幹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 兩條約을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한다.

1) ABM조약의 주요내용

본 조약은 ABM시스템의 數를 제한하며, 자국영역의 방위를 위하여 ABM시스템을 배치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ABM조약 제1조 1항 및 2항).¹⁶⁾ 원래 동 조약은 ABM의 완전철폐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ABM의 수를 낮은 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 이유는 ABM의 완전 철폐를 규정하더라도, 그 확인이 곤란하다는 데에 있었다.

첫째, ABM시스템의 배치가 허용되는 장소를 다음의 2곳에 한정하고 있다. 즉 各當事國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150Km 이내의 지역과 ICBM격납고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150KM 이내의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치장소에 관한 ABM조약 제3조의 규정은, 1974년 7월 3일 체결된 미-소간의 ABM조약에 대한 의정서에 의하여 각각 1곳으로 다시 제한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 수도에 ABM시스템을 배치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만약 배치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파괴 혹은 해체하여야 한다. 동시에 소련도 자국의 ICBM격납고의 배치지역에 ABM시스템을 배치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만약 배치되어져 있다면 그것을 파

15) Judge Nagendra Singh/Edward McWhinney, Nuclear Weapons and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2nd Revised Edit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Dordrecht, 1989, pp.478-495.

16) 통상적으로 ABM시스템이란 다음과 같이 定義되고 있다. 즉 ABM시스템이란 전략탄도미사일 혹은 그 구성요소를 탄도의 비행궤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ABM, 그 발사장치 및 그 레이다로 구성된다(ABM조약 제2조 1항).

괴 혹은 해체하여야 한다(ABM조약에 대한의정서 제1조 및 제2조). 따라서 소련은 ABM시스템을 Moscow에, 미국은 MinutemanIII격납고에 배치하고 있다.¹⁷⁾

둘째, ABM시스템, ABM과 그 발사장치는 각각에 100기까지 허용된다(ABM조약 제3조). ABM레이더의 수에 관하여는, 각국의 수도인 경우에는 각체약국에게 6기의 레이더가 허용되며, ICBM격납고인 경우에는 20기의 레이더가 허용된다.

셋째, ABM의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실험장에 ABM시스템을 둘 수 있다(ABM조약 제4조). 단, 이 경우의 ABM시스템은 상기 ABM시스템의 制限數值에 加算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各當事國은 실험장에 15기까지의 ABM발사장치를 둘 수 있다.

2) 잠정협정의 주요내용

본 협정은 重爆擊機 및 MIRV에 대한 규제조항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전략무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이고 한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협정 제7조에서는 각체약국으로 하여금 전략공격무기의 제한을 위한 적극적인 협상을 지속할 의무를 과하고 있다.

첫째, 1972년 7월 1일 이후 고정된 지상기지 ICBM발사장치의 추가적 제조금지 및 1964년 以前에 배치된 輕ICBM 및 舊型ICBM 지상기지발사장치를 重ICBM 지상기지발사장치로의 전환금지를 규정하고 있다(잠정협정 제1, 2조). 따라서 지상발사ICBM은 동결되며, 重ICBM으로의 전환금지로 인하여 ICBM의 질적 개선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 SLBM발사장치와 신형탄도미사일 잠수함은 동 협정의 서명

17) Minuteman이란 미국의 핵전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고체연료 3단로켓을 사용하는 ICBM이다. Minuteman II형과 III형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데, Minuteman II형은 1966년 12월부터 실전화되었다. MinutemanIII형은 3개의 탄두를 가진 MIRV로 1971년부터 배치되었다.

일인 1972년 5월 26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결된다(잠정협정 제3조). 그러나 동일자로 서명된 본 협정에 대한 의정서에서는 미국측에 최고 710기의 잠수함용탄도미사일 발사장치와 44척의 신형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소련측에 최고 950기의 잠수함용 탄도미사일 발사장치와 62척의 신형탄도미사일 잠수함을 허용하고 있음으로써, 미국은 54기의 SLBM을, 소련은 210기의 SLBM을 추가로 증강하는 것이 허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지상발사 ICBM의 동결의 의의를 크게 상쇄하는 꼴이 되었다.

셋째, 본 협정 제4조에서는 전략공격무기의 현대화와 교체를 허용하고 있다.

2. SALTⅡ 조약의 주요내용

1979년 6월 18일 '전략공격무기제한협정', '본협정에대한의정서', '데이타베이스의설치에관한양해각서' 및 'SALTⅡ조약과그의정서에대한공동성명과공동양해'를 각각 체결하였는 바,¹⁸⁾ 이를 諸文書를 'SALTⅡ 조약'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전략공격무기제한협정(19개 조항)'이 'SALTⅡ조약'의 기본을 형성하고 있다. 동 협정에서는 미-소 양국의 전략핵운반수단에 대하여 동일한 上限線을 두어, 그 총수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전략핵운반수단 중에서 특히 MIRV를 장착한 전략핵운반수단을 동일한 上限線으로 그 총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각체약국은 ICBM발사장치,¹⁹⁾

18) Judge Nagendra Singh/Edward McWhinney, op.cit., pp. 525-554.

19) 본 협정에서 ICBM발사장치란 미국대륙의 북동경계와 소련대륙의 북서경계간의 최단거리를 초과하는 유효사거리를 가진 지상기지탄도미사일발사장치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5,500Km이상의 유효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발사장치를 의미한다(전략공격무기제한협정 제2조 1항).

SLBM발사장치,²⁰⁾ 重爆擊機²¹⁾ 및 ASBM²²⁾의 총수는 2,400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한다(전략공격무기제한협정 제3조 1항). 이러한 총수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2,250기로 감축하여야²³⁾ 한다(전략공격무기제한협정 제3조 2항 및 제11조 3항). 상기 제한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즉 본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ICBM 발사장치는 4개월, SLBM 발사장치는 6개월 및 重爆擊機는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체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전략공격무기제한협정 제11조 2항), 전략공격무기는 1981년 12월 31일 以前에 해체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전략공격무기제한협정 제11조 3항).

- 20) 본 협정에서 SLBM발사장치란 그 형태와 무관하게 핵추진 잠수함에 장착된 탄도미사일발사장치 혹은 잠수함에 장착된 신형탄도미사일발사장치를 의미한다(전략공격무기제한협정 제 2조 2항).
- 21) 본 협정에서 중폭격기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첫째, 현재 미국의 B-52와 B-1과 같은 형태의 폭격기 및 소련의 Tupolev95와 Myasishchev와 같은 형태의 폭격기²⁴⁾
 둘째, 장래에는 앞서 열거한 폭격기들의 형태와 유사하거나 더 우수한 유형의 폭격기²⁵⁾
 셋째, 유효사거리 600Km이상인 크루즈미사일을 장착한 유형의 폭격기²⁶⁾
 넷째, 공중발사전략탄도미사일을 장착한 폭격기(전략공격무기제한협정 제2조 3항).
- 22) ASBM이란 공중발사전략탄도미사일(Air-to-Surface Ballistic Missile:이하 ASBM 이라고 약칭)로서, 항공기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장착되는 유효사거리 600Km이상인 전략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전략공격무기제한협정 제2조 4항). 아울러 전략공격무기의 수에 관한 Data Base의 설치에 관한 미-소간의 양해각서에서 ASBM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으로 인하여 ASBM의 수는 제한총수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하다.
- 23) 이러한 제한총수와 관련하여 약간의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협정에서는 제한총수내에서는 자유롭게 전략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전략공격무기제한협정 제3조 3항).
 둘째, 중폭격기의 수와 ASBM의 수와 관련하여, 중폭격기에 ASBM을 장착하는 경우에 제한수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본 협정 제3조 3항과 4항에서는 특정규정을 두고 있다. 즉 ASBM을 장착한 폭격기에 있어서 ASBM의 수는 제3조상의 제한수치에 포함되지만, ASBM만을 장착한 폭격기의 수는 그 제한수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MIRV를 장착한 전략핵운반수단의 추가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즉 MIRV를 장착한 ICBM발사장치, SLBM발사장치 및 ASBM 그리고 크루즈미사일을 장착한 重爆擊機는 총계 1,320기를 초과할 수 없다(전략공격무기협정 제5조 1항). 또한 MIRV를 장착한 ICBM발사장치, SLBM발사장치 및 ASBM은 총계 1,200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전략공격무기제한협정 제5조 2항), MIRV를 장착한 ICBM발사장치는 820기를 초과할 수 없다(전략공격무기제한협정 제5조 3항). 이에 따라, 미국은 MIRV를 장착한 ICBM발사장치와 SLBM발사장치를 154기까지 추가로 배치할 수 있게 되고 소련도 같은 분야에서 448기까지 추가배치를 할 수 있다.²⁴⁾

셋째, ICBM과 그 발사장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체약국에게 輕ICBM발사장치와 1964년 以前에 배치된 舊型 ICBM발사장치를 중ICBM발사장치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전

24) 전략공격무기의 수에 관한 DataBase의 설치에 관한 미-소간의 양해각서에 따르면, 1978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공격무기가 각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표방하고 있다.

	미국	소련
ICBM발사장치	1,054(1,054)	1,398(1,398)
ICBM고정발사장치	1,054(1,054)	1,398(1,398)
MIRV장착 ICBM발사장치	550(550)	576(608)
SLBM발사장치	656(656)	950(950)
MIRV장착 SLBM발사장치	496(496)	128(144)
중폭격기	574(573)	156(156)

그밖에 유효사거리 600Km을 초과하는 크루즈미사일을 장착한 중폭격기, ASBM 만을 장착한 중폭격기, ASBM 및 MIRV를 장착한 ASBM에 관해서는 양국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략공격무기제한협정의 서명시에 전략공격무기의 수에 관한 성명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1979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인데, 미-소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공격무기의 수치는 편의상 위도표에서 ()로 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효사거리 600Km를 초과하는 크루즈미사일을 장착한 중폭격기에 관해서는 미국이 3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략공격무기제한협정 제4조 3항). 또한 본 협정 제4조 7항과 9항에서는 각체약국으로 하여금 본 협정의 서명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배치되어 있는 重ICBM보다 더 무거운 발사중량 혹은 투사중량을 가지는 ICBM의 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신형ICBM의 배치와 비행실험도 금지하고 있다.²⁵⁾ 그러나 신형 輕ICBM인 경우에는 비행실험과 배치가 허용되고 있다(전략공격무기제한협정 제4조 9항). 또한 본 협정 제4조 10항에서는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MIRV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1979년 5월 1일까지 비행실험되어온 ICBM이 장착하고 있었던 最大數值보다 더 많은 수의 MIRV를 장착한 ICBM은 그 날 이후부터 비행실험과 배치가 금지된다.²⁶⁾ 따라서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MIRV의 수는 10개까지 허용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MIRV의 制限數值面에서 볼 때, ICBM 발사장치의 수는 제한되었으나 탄두수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전략의 균형이라는 기능에 반하여 그 위협요인을 존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넷째, 본 협정 제4조 12항에서는 SLBM에 장착할 수 있는 MIRV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수는 14개까지로 되어 있다.²⁷⁾ 이러한 許容數值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Poseidon C-3 SLCM의 경우를 반영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SLCM탄두수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한편 본 협정에서는 대잠수함무기와 신형 SLBM에 관하여는 전혀 제한규정을 두

25) 전략공격무기제한협정 제4조 9항에 대한 합의성명과 공동양해에서는 신형ICBM의 판단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즉 신형ICBM이란 1979년 5월 1일까지 비행시험되어온 ICBM과 약간의 측면(미사일의 스테이지 수, 길이, 최장직경, 투사중량, 발사중량 및 각 스테이지의 추진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차이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형ICBM이라고 한다.

26) 전략공격무기제한협정 제4조 10항에 대한 합의성명에서는 1979년 5월 1일까지 비행실험되어진 ICBM에 장착한 MIRV의 최대수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측의 ICBM으로서 Minuteman III:7개, 다음으로 소련측의 ICBM으로서 RS-16형:4개, RS-18형:6개 및 RS-20형:7개 등이다.

27) SLBM가 장착할 수 있는 MIRV의 최대수치는 다음과 같다. 미국측의 SLBM인 Poseidon C-3형:14개, Trident C-4형:7개 및 소련측의 SLBM인 RSM - 50형:7개.

고 있지 않음으로, SALTⅡ조약의 효과는 그만큼 제한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²⁸⁾

3. INF조약의 주요내용

前述한 바와 같이 1987년 12월 8일 미-소 양국간에 INF조약이 체결되었다(1988년 6월 1일 발효, 17개 조문으로 구성). 또한 동 조약에는 同日字로 서명된 3개의 개별문서, 즉, 데이터베이스(data base)의 설치에 관한양해각서, 미사일시스템의폐기절차에관한의정서 및 사찰에관한의정서(또한 사찰에관한의정서에는 사찰요원과 항공기승무원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부속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 조약은 미국과 소련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중·단거리 지상발사 탄도 및 크루즈미사일의 폐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INF조약 제2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체약국은 조약발효 후 3년 이내에 자국의 모든 중거리미사일,²⁹⁾ 그 발사장치, 지원구조물 및 지원장치를 철폐하여야 하며(동 조약 제4조 1항), 이러한 감축은 2단계로 이행되어져야 한다(동 조약 제4조 2항).³⁰⁾

28)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SIPRI Year Book 1980, Taylor & Francis Ltd., London, 1980, p.219.

29) 본 조약에서, '중거리미사일'이란 1,000KM-5,500KM의 유효사거리를 가지는 지상발사탄도미사일과 지상발사크루즈미사일을 의미한다(동 조약 제2조 5항). 따라서 오늘날의 미사일시스템중에서 중거리미사일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미국의 Pershing II와 BGM-109G을 들 수 있으며, 소련의 RSD-10, R-12 및 R-14를 들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명칭은 前者에 관해서는 미국과 소련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後者에 관해서는 미국이 각각 SS-20, SS-4 및 SS-5라고 부르고 있다(동 조약 제3조 1항).

30) 데이터베이스의설치에관한양해각서에서는 1987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의 중거리미사일과 그 발사장치에 관한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둘째, 각 체약국은 조약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자국의 모든 단거리 미사일,³¹⁾ 그 발사장치 및 지원장치를 철폐하여야 하며(동 조약 제5조 1항), 이러한 감축은 2단계로 이행되어져야 한다(동 조약 제5조 2항).³²⁾

상기 의무로 인하여, 미국은 자국이 배치하고 있는 Pershing II 중거리미사일과 BGM109G 지상발사크루즈미사일 및 비배치된 Pershing

1987년 11월 1일 현재의 중거리미사일과 그 발사장치의 수치는 다음과 같다.

	기 배 치		비 배 치		합 계	
	미사일	발사장치	미사일	발사장치	미사일	발사장치
미국	429	214	260	68	689	282
소련	470	484	356	124	826	608

그런데, 이러한 중거리미사일과 그 발사장치를 2단계에 걸쳐 철폐하도록 하고 있는데, 먼저 제2단계는 조약발효후 3년 이내에 중거리미사일과 그 발사장치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구조물과 지원장비를 철폐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제1단계는 조약발효후 29개월 이내에 중거리미사일과 그 발사장치에 관해 다음과 같은 상한을 정하고 있다.

첫째, 배치된 중거리미사일 발사장치의 수는 171개의 탄두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의 발사장치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비배치된 중거리미사일 발사장치를 포함한 총발사장치의 수는 동시에 200개의 탄두를 장착할 만큼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둘째, 배치된 중거리미사일의 수는 180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만큼의 미사일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비배치된 중거리미사일을 포함한 총중거리미사일의 수는 200개의 탄두를 장착할 만큼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동 조약 제4조 2항 및 동 양해각서).

- 31) 본 조약에서 '단거리미사일'이란 500KM-1,000KM의 유효사거리를 가지는 지상발사탄도미사일과 지상발사크루즈미사일을 의미한다(동 조약 제2조 6항). 따라서 미사일시스템중에서 단거리미사일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미국의 Pershing IA가 있으며, 소련의 OTR-22와 OTR-23이 있다. 다만 이러한 명칭과 관련하여 前者에 관해서는 미국과 소련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後者에 관해서는 미국이 각각 SS-12와 SS-23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동 조약 제3조 2항).
- 32) 데이터베이스의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에서는 1987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자국의 단거리미사일과 그 발사장치에 관한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987년 11월 1일 현재의 미-소 양국의 단거리미사일과 그 발사장치의 수치는 다음과 같다.

IA 단거리미사일을 각각 철폐하여야 하며, 소련도 자국이 배치하고 있는 SS-20, SS-4 및 SS-5 중거리미사일과 SS-12 및 SS-23 단거리 미사일을 철폐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철폐에는 핵탄두의 장착유무와는 관계없이 모든 미사일이 포함된다.³³⁾

셋째, 각체약국은 조약발효 이후부터 모든 중·단거리미사일을 생산 혹은 비행실험을 행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또한 그러한 미사일의 모든 단(stages)이나 또는 발사장치를 생산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동 조약 제6조).

4. START I 조약의 주요내용

START I 조약은 同條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문(text)을 비롯하여, 공동성명부속서, 용어의定義에관한부속서, 전환또는폐기에관한의정서, 檢察에관한의정서, 통고에관한의정서, 投射重量에관한의정서, 遠隔測定에관한의정서, 합동준수·사찰위원회에관한

	기 배 치		비 배 치		합 계	
	미사일	발사장치	미사일	발사장치	미사일	발사장치
미국			178	1	178	1
소련	387	197	639	40	926	237

그런데 이러한 단거리미사일과 그 발사장치를 2단계에 걸쳐 전폐하도록 하고 있는데, 먼저 제2단계는 조약발효후 18개월 이내에 단거리미사일 및 그 발사장치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장치를 전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단계는 조약발효후 90일 이내에 모든 배치된 단거리미사일과 모든 그 발사장치(배치된 발사장치와 비배치된 발사장치를 포함)가 폐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또한 조약발효후 12개월 이내에 비배치된 단거리미사일은 폐기가 완료되어야 한다(동 조약 제5조 및 동 양해각서).

33) Stephen Iwan Griffiths, "The implementation of the INF Treaty", SIPRI Yearbook 1990:World Armament and Disarmament,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xford Univ.Press, New York, 1990, p.443.

의정서 및 데이터의 설정에 관한 양해각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추가로前述한文書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는 관련협정, 미-소 양국의 대표에 의하여 서명된 서신, 보조문서 및宣言 등이 있다.³⁴⁾ 이처럼 START I 조약은 매우 많은 관련 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既配置된 전략공격무기의 上限

먼저 전략핵운반체(strategic nuclear delivery vehicles)에 대한 上限을 정하고 있다. 즉 既配置의 ICBM과 그 관련발사장치, SLBM과 그 관련발사장치 및 重爆擊機의 총수는 본 조약의 발효후 7년 후에는 1,600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數值에는 重ICBM과 그 관련 발사장치의 制限數值(154기)가 포함된다(동 조약 제2조 1항 a). 이러한 전략핵운반체의 制限數值은 199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전략공격무기의 基本數值를 정하고 있는 “양해각서”와 비교할 경우,³⁵⁾ 미국은 29%, 소련은 36%의 전략핵운반체의 감축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련만이 배치하고 있었던 重ICBM과 그 발사장치의 數值를 154기로 감축한 것은 전술한 양해각서상의 數值와 비교할 때,³⁶⁾ 50%를 감축하는 셈이 된다.

둘째, 탄두에 대한 上限을 정하고 있다. 즉 세부적으로는 既配置된 ICBM과 SLBM에 탑재된 탄두가 4,900개, 이동식 ICBM발사장치에 배치된 ICBM에 탑재된 탄두가 1,100개 및 既配置된 重ICBM에 탑재된 탄두가 1,540개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既配置된 ICBM, SLBM 및 重爆擊機에 탑재된 탄두의 총수는 조약발효 7년후에 6,000개를 초과

34) Dispatch Supplement:START, Vol.2, Supplement No.5, 1991.10.

35) 동 양해각서에서는 미국이 2,246기의 전략핵운반체를, 소련이 2,500기의 전략핵운반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6) 199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소련은 重ICBM인 SS-18과 그 관련발사장치를 308기 배치하고 있다.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동 조약 제2조 1항 b). 이러한 총탄두수의 제한은 前記한 양해각서에서 정하고 있는 數值와 비교할 경우,³⁷⁾ 미국이 43%, 소련이 41%를 감축하는 것이 된다.

셋째, 投射重量(throw-weight)에 대한 上限을 두고 있다.³⁸⁾ 즉 既配置된 ICBM과 既配置된 SLBM의 總投射重量은 同條約의 발효후 7년 후에 3,600metric ton을 초과할 수 없다(동 조약 제2조 3항).

2) 전략공격무기의 減縮段階

본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上限은 동 조약의 발효 7년 후에 완료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특히 동 조약에서는 조약 발효후 3년, 5년 및 7년이라는 3단계로 그 上限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본 조약 서명시의 미·소 양국의 전략공격무기의 보유량과 그 감축예정표는 다음과 같다(동 조약 제2조 2항).

	전략핵운반체		탄 두		ICBM·SLBM 탄두	
	미국	소련	미국	소련	미국	소련
서명시	2,246	2,500	10,563	10,271	8,210	9,416
3년후		2,100		9,150		8,050
5년후		1,900		7,950		6,750
7년후		1,600		6,000		4,900

37) 199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은 10,563개의 탄두를 그리고 소련은 10,271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양해각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38) 투사중량이란 적재하중 또는 최종하중과 동의어로 ICBM 등의 탑재물중량을 의미한다. ICBM 등에서 최종단계의 로켓엔진이 연소완료되어 떨어져 나간 뒤에 남는 중량으로, 탄두·유도시스템·대기권재돌입용장치 등의 중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투사중량은 로켓엔진의 추진력, 발사중량 및 로켓의 단계수 등에 의해 결정되며, 투사중량을 크게하기 위해서는 로켓엔진의 추진력을 크게할 것과 구조중량을 가볍게 할 것 등이 필요하게 된다. 소련의 ICBM은 투사중량에 관한 한 미국의 것보다 우수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5. START II 조약의 주요내용

START II 조약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본문, 重ICBM 폐기 및 重ICBM 미사일로의 전환에 관한 규정서, 重爆擊機의 전시(exhibition)와 사찰에 관한 규정서 및 폭격기의 데이터와 부속 탄두에 관한 양해각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³⁹⁾ 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탄두수의 制限

START II 조약 제1조에서는 전략핵운반체(ICBM, SLBM 및 重爆擊機)에 장착된 탄두의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은 2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제1단계는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최초의 7년간 전략핵탄두의 총 보유수를 3,800-4,250개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既配置된 SLBM에 장착된 탄두의 수는 2,160개를, 既配置된 다탄두 ICBM에 장착된 탄두의 수는 1,200개를 그리고 既配置된 重ICBM인 구소련의 SS-18에 장착된 탄두의 수는 650개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2단계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총보유수를 3,000-3,500개로 감축한다는 것이다.⁴⁰⁾ 구체적으로는 既配置된 SLCM에 장착된 탄두의 수는 1,750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既配置된 다탄두 ICBM에 장착된 탄두는 전량 폐기되어야 하며,⁴¹⁾ 既配置된 重ICBM에 장착된 탄두도 전량 폐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2단계의 감축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단지 1,700-1,750개의 탄두만이 미국과 러시아의 SLBM상에 배치되

39) Arms Control Today, Vol.23, No.1, 1993.2, p.START II Supplement 4.

40) 단 본 조약의 발효후 1년 이내에,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본 조약의 이행을 촉진 할 특정의 약정을 체결한다면, 본 조약상의 의무-제2단계 핵무기감축-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다(본 조약 제1조 6항).

41) 이 경우 폐기방법으로는 그대로 폐기하거나 혹은 최고 90기까지는 발사장치를 개조하여 단일탄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SS-18의 발사장치 90개를 SS-25의 발사장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⁴²⁾

2) 其他 規定

그 밖에도 미사일의 폐기 및 사일로의 전환에 관한 규정(동 조약 제2조), Downloading에⁴³⁾ 관한 규정(동 조약 제3조), 폭격기에 관한 규칙(동 조약 제4조), 검증에 관한 규정(동 조약 제5조) 및 기간·개정·탈퇴 및 등록에 관한 규정(동 조약 제6조-제8조) 등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 약간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1월 1일 이후,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본 조약에 포함된 다탄두 ICBM를 생산, 취득 및 배치하지 않으며, 우주로켓발사기지로부터의 비행실험 이외의 비행실험도 행하지 않는다(동 조약 제2조 9항).

둘째,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각각 105기의 다탄두ICBM을 1기당 최고 5개의 탄두를 제거해 단일탄두를 지닌 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의한다(동 조약 제3조 2항 c). 이 조항도 러시아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러시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유로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6개의 핵탄두를 지닌 SS-19미사일 170기 가운데 105기를 단일탄두미사일로 전환하기를 요구하였던 것이다.⁴⁴⁾

셋째, 重爆擊機에 있어서 기종당 탑재할 수 있는 탄두의 수는 “탄두와重爆擊機의 데이터에 관한양해각서”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한다(동 조약 제4조 2항).

넷째,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본 조약의 발효후 180일 이내에, 양 해각서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重爆擊機를 하나씩 전시하여야 한다. 이는 展示된 重爆擊機가 실제로 탑재하고 있는 핵무기의 수를 상대방당

42) Arms Control Today, op.cit., p. START II Supplement 3.

43) Downloading이란 기존의 다탄두발사장치상의 탄두수를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44) Arms control Today, op.cit., p. START II Supplement 3.

사국에게 확인케 하기 위함이다(동 조약 제4조 4항).

다섯째, 일방당사국이 양해각서에 포함된 重爆擊機에 탑재된 핵무기의 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당사국에 그 90일 前에 통고하여야 한다(동 조약 제4조 5항).

여섯째, 양국은 또한 최고 100대까지의 重爆擊機를 핵폭격기에서 재래식폭격기로 재전환할 수 있으며, 추후에 逆節次를 밟는 것도 가능하다(동 조약 제4조 7항-9항).

일곱째, START I 조약이 발효된 후에야 START II 조약이 발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동 조약 제6조 1항).

IV. 핵무기 통제의 한계

미-소(러시아)가 벌여 온 핵무기 통제가, 비록 양자조약의 성격을 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의 비축규모와 질적 수준에 있어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간에 이루어져 왔다는 점과 핵군비의 실질적인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2002년 12월 31일까지 현재 미-러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핵무기의 2/3를 폐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START II 조약의 체결은 핵군축노력의 큰 성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핵무기의 전면적 폐기를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써 1997년 Clinton과 Yeltsin은 양국의 전략핵무기를 더욱 더 감축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START III 조약'의 대강에⁴⁵⁾ 관해 합의한 바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

45) START III 조약의 주된 내용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전략핵탄두의 수를 2,000-2,500기로 각각 감축하자는 것이다. 또한 동 조약에서는 양국간 새로운 핵투명성의 확보와 신뢰구축조치의 형성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Shannon Kile, "Nuclear arms control", SIPRI Yearbook 1998: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v.Press,

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미-소(러시아)간의 핵무기 통제는 다방면에서 위협받고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최근 러시아의 정치적 혼란과 패권국가로의 복귀 움직임은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상기 양국간의 핵무기 통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아가 핵군비의 폐기에 소요되는 費用問題, 제조약의 발효문제와 이행문제 등도 양국간 핵무기 통제에 있어서 큰 어려움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1. 발효문제

1998년 현재 ABM조약을 비롯하여 INF조약, START I 조약은 1972년 10월 3일, 1988년 6월 1일 그리고 1994년 12월 5일에 각각 효력을 발생하였는 반면, START II조약은 아직 미발효 상태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발효와 관련하여 야기되어 온 START제조약의 문제점을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91년 7월 30일 미국과 구소련간에 체결된 START I 조약은, 구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이행과 비준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얹히게 된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였다. 특히 START I 조약의 발효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카자흐, 벨로루시 등의 비준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⁴⁶⁾

따라서 카자흐는 1992년 7월 2일에, 미국은 1992년 10월 1일에, 러

New York, 1998(이하 Shannon Kile SIPRI1998이라고 약칭함), p.410, 414].

46) START I 조약이 양자조약(미국과 구소련)의 형태에서 다자조약(미국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핵무기보유 공화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 벨로루시)의 형태로 전환된 것은 1992년 5월 23일 상기 5개국 외무장관들이 서명한 Lisbon의 정서의 결과이다.

시아는 1992년 11월 4일에, 벨로루시는 1993년 2월 4일에⁴⁷⁾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1994년에 각각 START I 조약을 비준하였다.⁴⁸⁾ 이러한 비준과정에서 러시아 의회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카자흐 및 벨로루시가 START I 조약을 완전히 이행하고 NPT에 핵무기비보유국의 지위로서 가입할 때까지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붙인 바 있으며, 또한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는 “자국의 안전보장과 핵무기를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그 비준의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재정적 원조와 안보보장 및 핵탄두의 이동비용에 대한 보상을 확인한 이후인 1994년에 우크라이나는 마지막으로 비준절차를 거쳤던 것이다.⁴⁹⁾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4년 12월 5일 Hungary의 Budapest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정상회담에서 상기 諸國이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START I 조약은 효력을 발생하였다.⁵⁰⁾

반면 START II 조약은 1998년 현재 미발효상태로 있다.⁵¹⁾ 이는 미국이 이미 1996년 1월에 압도적인 지지로 START II 조약에 대한 비준 절차를 마친 반면,⁵²⁾ 아직 러시아가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47) SIPRI Yearbook 1993, op.cit., pp.550-554.

48) Shannon Kile, "Nuclear arms control", SIPRI Yearbook 1997: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v.Press, New York, 1997 (이하 Shannon Kile SIPRI1997이라고 약칭함), p.367.

49) Dunbar Lockwood, "Nuclear Arms Control", SIPRI Yearbook 1994: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 Oxford Univ.Press, New York, 1994, p.640.

50) James E.Goodby/Shannon Kiel/Harald Muller, "Nuclear Arms control", SIPRI Yearbook 1995: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v.Press, New York, 1995, pp.636-639.

51)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1998: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v.Press, New York, 1998(이하 SIPRI Yearbook 1998로 약칭함), p.593.

52) 1996년 1월 26일 미국의 상원은 87:4라는 압도적 지지로 START II 조약을 비준하면서 8개항의 조건을 붙였던 바, “만약 러시아가 START II 조약을 비준하지

다.⁵³⁾ 이처럼 러시아가 비준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다방면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⁵⁴⁾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NATO회원국의 확대현상과 연관되는 것 같다. 사실 러시아Duma는 NATO의 회원국 확대(구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에 대한)경향에 대해 특히 강력한 반발을 보여 왔는 바, 이는 STARTⅡ조약의 비준에 큰 장애가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⁵⁵⁾

그후,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Helsinki정상회담을 통하여 전술한 STARTⅢ조약의 대강에 합의하였으며 또한 STARTⅡ조약의 이행연장(후속함)을 위한 의정서의 채택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1997년 9월 26일 양국이 STARTⅡ조약에 대한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STARTⅡ조약의 최종이행시한은 2007년 12월 31일로 연기되어졌던 것이다.

2. 검증문제

일반적으로 검증이란 체약국이 특정군축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이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바,⁵⁶⁾ 특별히 미국과 구소련(러시아)간에 체결된 핵군축조약에서

않는 경우라면, 미국의 전략핵무기를 START I 조약상의 상한 이하로 감축하기에 앞서 미대통령은 반드시 상원에 조언을 구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은 주목할 만 하다(Shannon Kile SIPRI1997, op.cit., p.371).

- 53) Ibid., p.366.
- 54) 그러한 원인으로는 NATO회원국의 확대뿐만 아니라 예산상의 부담, 기술상의 문제, 국내정치의 불안정 및 비준문제가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프로그램을 둘러싼 폭넓은 안보정책논의와 맞물려 있다는 점 등이다(Shannon Kile SIPRI1998, op.cit., pp.408-409).
- 55) 1993년의 러시아 헌법에서는 “조약의 비준은 상하 양원의 단순다수결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STARTⅡ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원(Federal Council)과 하원(State Duma)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Ibid., p.409).
- 56)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SIPRI Yearbook 1977, Oxford Univ.Press, New York, 1977,

는 가장 완전한 검증체제를 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 이전의 핵군축조약과 달리, INF조약과 START제조약에서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강제적인 검증체제를 두고 있다. 특히 START제조약에서는 INF조약상의 검증규정을 바탕으로 더욱 상세하고 엄격한 검증규정을 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START제조약에서는 국내검증기술수단(National Technical Means:이하 NTM이라 약칭함)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적 검증조치(예컨대 관련 자료의 교환 등)와 12가지의 상세한 현지사찰제도에 의한 검증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당초 미국과 구소련간의 핵무기 통제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대립을 보였던 검증분야에서의 이러한 진전은 1980년대 중반까지 자국 영역으로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거부하였던 소련군비정책의 큰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⁵⁷⁾

이처럼 양국간에는 매우 발달된 검증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검증의 수단으로써 상대국의 영역을 출입할 수 있는 상세한 현지사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현지사찰은 모든 장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양해각서에서 명기하고 있는 선언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사찰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선언된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현지사찰을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⁵⁸⁾ 둘째, 군축조약에 있어서 검증체제가 갖는 본질적 한계로서 어느 정도의 강제력과 침투력을 갖는 검증체제를 취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즉 지난 군축사를 돌아볼 때, 보다 강력한 검증체제를 갖춘 군축조약의 경우에는 각종 정보를 비공개하려는 성향의 국가에게 군축조약에의 가입 자체를 주저하게 함으로써 효과적 군축의 실현에

pp.13-14.

57) 이용호, “핵군축조약상의 검증제도에 관한 연구-핵군축에 관한 제조약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1994.8, 171-235면.

58) 앞의 논문, 236면.

장애가 되며, 반면 침투력이 약한 검증체제나 대략적 검증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군축조약의 체결은 상대적으로 용이할지 모르나 그러한 검증체제로써는 당해조약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상호 관련성이 도출되곤 하였다는 점이다.

3. 이행문제

전술한 바와 같은 미-소(러시아) 양국간에 체결된 제조약중에, INF조약은 1991년 5월에 이미 완전히 이해된 바 있는⁵⁹⁾ 등, 이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START제조약이다. 특히 STARTⅡ조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1997년 9월 26일에 서명한 'STARTⅡ조약에대한의정서'에 따라 당해조약의 이행을 당초 2003년 1월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러한 이행일자의 연장은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⁶⁰⁾ 따라서 여기서는 START I 조약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1) 미국과 러시아

1994년 12월 5일 START I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본 논문 III. 4. 3)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2001년 12월 5일까지 전략핵운반체와 핵탄두 및 ICBM·SLBM의 탄두를 각각 약 50% 수준(1990년 9월 1일의 양해각서에서 밝히고 있는 수의 약 50% 수준)으로 감축하여야 하며, 또한 1997년 12월 5일과 1999년 12월 5일을 기점으로 한 각각의 잠정적 폐기상한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상

59) 비록 INF조약이 완전히 이행되었지만, 그 이행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약간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즉 X-ray장비문제, 탄두의 재사용문제, 환경적 고려문제 등을 포함한 약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이용호, "INF조약의 의의와 그 이행상의 문제점", 영남법학, 제4권 제1·2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2, pp.243-248).

60) SIPRI Yearbook 1998, op.cit., pp.410-411, 593.

한에 비추어, 1998년 1월 현재 상기 양국은 당해조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1998년 1월 현재, 배치된 미사일발사장치와 중폭격기는 2001년 12월 5일의 폐기상한에 그리고 핵탄두의 수는 1999년 12월 5일의 폐기상한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경우, 1998년 1월 현재, 핵탄두의 수는 1999년 12월 5일의 폐기상한에 그리고 전략핵운반체는 2001년 12월 5일의 폐기상한에 접근하고 있다.⁶¹⁾

3) 우크라이나

1996년 6월 1일, 우크라이나의 Leonid Kuchma 대통령은 “자국에 배치되어 있던 약 1,800기의 전략핵탄두(주로 ICBM)를 그 해체를 위해 러시아로 완전히 이전하였다”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지난 1992년 5월에 약 2,500기의 전술핵탄두가 러시아로 이전된 사실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를 비핵화지역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며, 또한 자신의 비핵화공약(Lisbon의정서 및 그 부속문서⁶²⁾)을 이행한 것이기도 하다.⁶³⁾

반면 우크라이나는 START I 조약의 폐기절차에 따라 자국내에 있는 미사일사일로와 발사체사일로를 폐기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사일로의 폐기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합의한 25기의 중폭격기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⁶⁴⁾

61) Shannon Kile SIPRI1998, op.cit., pp.405-406.

62) Lisbon의정서는 카자흐,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에 분산되어 있던 구소련의 핵탄두를 러시아로 결집하고 운반체와 그 관련구조물을 폐기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Ibid., p.406).

63) Shannon Kile SIPRI1997, op.cit., pp.368-369.

64) 우크라이나는, 1997년 7월 현재, 130기의 SS-19사일로와 46기의 SS-24사일로 가운데 66기의 SS-19사일로만을 해체하였는 바, 러시아는 이러한 폐기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불평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Shannon Kile SIPRI1998, op.cit., p.407).

이러한 우크라이나에 있어서의 이행문제는 특히 재정적 지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1997년 5월 미국방장관 William Cohen과 우크라이나의 국방장관 Olexander Kuzmuk간에 서명된 협정을 통하여, 4억 7천만 달러가 추가적으로 지원됨으로써 총 45억 1천만 달러가 폐기비용으로 지원되었다는 사실이다.⁶⁵⁾

이처럼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START I 조약의 이행은 재정적 지원의 여하에 따라 그 성공여부가 결정된다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다.

4) 카자흐

1995년 4월, 카자흐는 자국에 배치되어 있던 전략핵탄두를 러시아로 완전히 이동시켰는 바, 이로써 카자흐는 비핵화지역으로 남겨졌으며 또한 자신의 비핵화공약(Lisbon의정서 및 부속문서)을 이행한 국가가 되었다. 또한 1996년 러시아-카자흐 합동위원회에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일련의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모든 SS-18사일로에 대한 폐기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96년 8월 29일 카자흐에 있는 마지막 미사일사일로가 폐기되었음을 러시아전략로켓군 요원은 확인하였다.⁶⁶⁾

5) 벨로루시

벨로루시에 있어서는, NATO의 중앙유럽에의 핵배치와 관련한 안보문제로, 러시아로의 전략핵탄두의 이전문제가 지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6년 11월 27일에 마지막 16기의 전략핵탄두가 러시아로 이전됨으로써, 벨로루시도 자신의 비핵화공약(Lisbon의정서 및 부속문서)을 이행하고 있다.⁶⁷⁾

특히 카자흐와 우크라이나에 이어 벨로루시가 마지막으로 자국의

65) Ibid.

66) Shannon Kile SIPRI1997, op.cit., p.370.

67) Ibid.

전략핵탄두를 러시아에 이전함으로써, 구소련연방의 구성국 가운데 러시아만이 유일한 핵무기보유국으로 남게 되었으며, 그러한 핵탄두의 이전 완료는 구소련이 남긴 핵무기문제를 1차적으로 매듭짓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핵무기비확산 노력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전기를 제공하였다.⁶⁸⁾

V. 결어

미국과 구소련(러시아) 양국은 SALT, INF협상 및 START를 통하여, 핵무기를 상당량 감축하여 왔다. 특히 1997년 3월에 개최된 Helsinki정상회담을 통하여 그 대강을 정하고 있는 STARTⅢ조약(2007년 12월 31일까지 미-러 양국의 핵탄두의 수를 각각 2,000-2,500기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내용)이 체결되어 이행되어진다면, 인류는 핵의 공포로부터 상당히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과 구소련(러시아) 양국간의 핵무기 통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나,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상기 양국간의 핵무기 통제에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START I 조약에 대한 발효가 상당히 늦추어졌으며, 아직 START II 조약이 미발효상태에 있으며 또한 START II 조약의 이행이 2007년으로 확장연기(START II 조약에 대한의정서)되는 등의 제반사정은 양국간 핵무기 통제의 큰 장애로 자리하고 있다. 둘째 정치적 혼란과 패권국가로의 복귀 움직임[1995년 선거에서 공산당이 Duma의 최다의석(450석 중 157석)을 차지함]을 보이고 있는 최근 러시아의 국내정치상황 또한 핵무기 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밖에도 核軍備의 폐기

68) Shannon Kile SIPRI1998, op.cit., p.406.

에 소요되는 費用問題, 諒解覺書에서 明記되어 있는 선언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검증체제에서의 한계 등도 효과적 핵무기 통제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미국과 구소련(러시아) 양국간의 핵무기 통제는 러시아의 경제적·안보적·국내정치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효과적인 양국간의 핵무기 통제를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핵무기의 폐기비용 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무기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생산비용의 10배에 해당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은 핵무기 폐기의 이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처럼 조성된 전략핵무기의 폐기합의가 경제적 이유로 무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둘째 INF조약이 완전히 이행된 바 있다는 선례에 입각하여, START제조약상의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미-러 양국의 실질적인 노력과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실 전략핵무기의 감축문제는 자국의 안보적·정치적 문제와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미-러 양측은 안보적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수반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군사력의 투명성 확보와 각종 자료의 공개 등을 통한 상호 신뢰관계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지난 군축경험에 비추어 보면, 효과적인 군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관계의 구축이 바탕이 되어 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국간에도 점진적인 신뢰관계의 구축을 통하여 완전한 핵무기 통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